

[2009년 5월 23일시행 지방직(수탁) 9급 ㉔형]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②

②는 틀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요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월행정법 총론 p.701참조).

[관련법조]

질서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③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701~703참조).

2.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②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①

①은 틀림.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신월행정법 총론 p.631참조).

[관련판례]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1994. 10. 28, 94누5144)

②~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630~632참조).

[관련판례]

<대집행계고서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서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대판 1994. 10. 28, 94누5144)

[관련판례]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소극)>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이행종기인 5.24. 이를 수령하였다면, 설사 피고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다더라도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90. 9. 14, 90누2048)

[관련법조]

행정대집행법

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 ②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②

②는 틀림.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성질상 별개의 행위이므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신월행정법 총론 p.623참조).

①③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623,p.635,p.636,p.638참조).

[관련법조]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⑥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③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 ④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④

④는 틀림.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도 포함되고, 위자료청구와 같은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신월행정법 총론 p.823,p.827참조).

①~③은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808,p.810,p.813,p.818참조).

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ㄱ. 서울특별시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 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 ㄷ.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ㄹ.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 ㅁ.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ㅁ

[해설] ③

ㄱ.은 틀림. 서울특별시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936참조).

ㄴ.은 틀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신월행정법 총론 p.937참조).

ㄷ.은 틀림.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952참조).

ㄹ.은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942,p.944,p.954참조).

[관련법조]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2.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 ④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④

④는 틀림.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신월행정법 총론 p.269,p.975,p.979,p.995참조).

[관련판례]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대판 1996. 9. 20, 95누8003)

①~③은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964~966참조).

7.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④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①은 틀림. 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지만 당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신월행정법 총론 p.1019~1020참조).

②~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1019~1020참조).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8.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 ④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해설] ④

④는 틀림.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신월행정법 총론 p.407~408,p.974참조).

[관련판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및 전심절차의 이행방법>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대판 1996. 9. 25, 93누17935)

①~③은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281~282,p.343,p.974~975참조).

9. 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② 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한다.
- ③ 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해설] ①

①은 타당.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신월행정법 총론 p.358참조).

[관련판례]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이 자유재량 행위인지 여부(적극)>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일단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개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시행전에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판 1989. 9. 12, 88누9206)

②는 틀림. 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신월행정법 총론 p.357~358참조).

③은 틀림. 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신월행정법 총론 p.357~358참조).

④도 틀림.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신월행정법 총론 p.380참조).

10.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 ②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②

②는 타당.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신월행정법 총론 p.1023참조).

①은 틀림.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1022참조).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은 틀림.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신월행정법 총론 p.1027참조).

[관련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90, 12. 11 90누3560)

④도 틀림.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1024참조).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②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 ③ 공법의 특수성 상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③

③은 틀림. 공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원래 시효제도는 민법상 발전되어 온 것이나, 시효제도가 인정되는 기본취지를 볼 때,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일반법원리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행정법상 시효제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신월행정법 총론 p.225~226참조).

[관련법조]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납세고지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3. 교부청구
- 4. 압류

①②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225~227참조).

1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 등이 그 예이다.
- ②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 ③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판례는“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도로부터 10m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해설] ②

②는 틀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통상적인 법규명령과 같이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된다. 즉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취지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입법의 제한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포괄적 위임의 금지의 원칙 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또한 수권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259참조).

[관련판례]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에서)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①③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275~277,p.279~280참조).

1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행정행위의 재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④

④는 타당.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다수설의 입장)(신월행정법 총론 p.421참조).

①은 틀림.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신월행정법 총론 p.416참조).

[관련판례]

<직권취소의 근거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5. 9. 15, 95누6311)

②는 틀림. 행정행위의 재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경우 재결기관,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법원이 된다.(신월행정법 총론 p.416참조).

③도 틀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휘 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입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4.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 당시, 독일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 ① 개별적·구체적 규율
- ② 개별적·추상적 규율
- ③ 일반적·구체적 규율
- ④ 일반적·추상적 규율

[해설]③

③은 타당. 설문 내용은 일반적·구체적 규율로서 대인적 일반처분에 해당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317참조).

15. 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③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해설]①

①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974참조).

[관련판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판 2005. 7. 8, 2005두487)

②~④는 행정처분이 아니다(신월행정법 총론 p.316,p.369,p.976참조).

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해설]③

③은 틀림.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신월행정법 총론 p.540참조).

①②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545,p549,p551참조).

17.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 ②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 ③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 ④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해설]④

④는 틀림.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절차법상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개별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544참조).

①~③은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542~544참조).

1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 ②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일시·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①

①은 틀림.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224,p.750참조).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②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752,p.761참조).

19.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2009년도지방직(수탁) 9급]

- ①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해설]①

①은 타당. 중요한 처분이라면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월행정법 총론 p.413,p.753참조).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④는 이유제시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이다(신월행정법 총론 p.753참조).

20.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9급]

- ①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처리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③

③은 틀림.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도 인정된다(신월행정법 총론 p.581참조).

[관련법조]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등】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②④는 타당(신월행정법 총론 p.580,p.582참조).